뉴스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상의하세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

발행일

2023년 8월 11일

발행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02-2001-7114(代) www.kpf.or.kr

기획 / 제작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02-2001-7791~8 news@kpf.or.kr

디자인

(주)그루비즈 02-2278-9696





<u>뉴스도 저작권법의</u>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저작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음악 · 영상물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이 크게 높아진 최근의 사회 분위기는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기사는 지식기반사회의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 저작물 중 하나임에도 '무료'라는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이 힘들여 생산한 저작물인 뉴스 기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복사 · 배포되면 뉴스 콘텐츠의 생산 기반과 창작 의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인터넷에서의 뉴스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뉴스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뉴스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Contents

www.kpf.or.kr

	서식권입의 목식	
저작권법의 이해	저작물 개요	05
	저작권자의 권리	06
	저작권의 발생	06
	저작권자의 법적 성질	06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07
	저작권의 등록	07
2	뉴스저작물의 개념	09
뉴스저작권이란?	뉴스저작물의 종류	09
	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10
	뉴스저작권은 왜 보호되어야 할까요?	11
3	 저작권 침해 사례 ① _ 무단전재	13
이런 경우가	저작권 침해 사례 ② _ 사내 게시판 게재	14
뉴스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사례 ③ _ 스크랩, 배포	15
	저작권 침해 사례 ④ _ SNS 재배포	16
	저작권 침해 사례 ⑤ _ 무단출판 인쇄	17
4		
4 올바른 뉴스저작물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19
	2. 뉴스저작물 구입을 통한 활용 사례	23
이용방법	3. 뉴스저작물 이용 문의처	26
	4. 뉴스저작권 사업 참여 언론사	27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29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이란?

시, 소설, 뉴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뿐만 아니라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저작건법의 이해



0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02. 저작물 개요

↑ 정의[제2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물의 예시 [제4조]

-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뉴스는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 음악저작물
-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 영상저작물
-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③ 저작자[제8, 9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법인, 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법의 이해

1. 저작권법의 이해



03. 저작권자의 권리

[제9.10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법인, 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저작인격권 [제11~15조]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등
- ◆ 저작재산권 [제16조~22조]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04.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는 다릅니다.

05. 저작권자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준물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06.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 제44조]

- **1 원칙**: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 **2**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3 법인 등이 저작자인 업무상 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4 영상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⑤ 공동저작물**: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i) 보호기간의 기산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07. 저작권의 등록

[제53, 54조]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 ◆ 등록에 따른 일정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습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으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게 됩니다.
- ◆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5조 제4항]
- ◆ 저작재산권의 양도, 출판권의 설정 및 양도 등에 있어서는 등록한 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채권양도의 통지가 갖는 효력과 유사합니다.

06 뉴스저작권 이용가이드북 1. 저작권법의 이해 07

뉴스저작권 이란?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되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서, 혹은 무심결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뉴스는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창작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뉴스저작권이란?



01. 뉴스저작물의 개념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 명시된 어문 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02. 뉴스저작물의 종류



①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❷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은 사진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❸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은 음악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는 영상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2. 뉴스저작권이란?

2. 뉴스저작권이란?



03. 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언론사의 뉴스 기사와 보도사진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입니다.

뉴스저작물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뉴스저작권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무단 복사, 재배포가 손쉬워지면서 기업, 기관,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의 뉴스 기사와 보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단순 사실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뉴스 기사 중 부고, 인사동정, 주식시세, 일기예보,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 제5호]

그러나 위 예시를 제외한 뉴스 기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04. 뉴스저작권은 왜 보호되어야 할까요?

저작권 보호는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쉽게 접하는 뉴스이지만 여기에도 누군가의 창작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뉴스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가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양질의 뉴스 정보로 재생산됩니다.

언론사가 힘들게 만든 뉴스저작물이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값을 받고 이용되어야 재투자를 통한 양질의 뉴스 기사 생산이 가능해지고, 건전한 뉴스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언론산업의 기반을 유지합니다.

뉴스 이용자가 뉴스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때,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 뉴스저작권 이용가이드북 2. 뉴스저작권이란?

이런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뉴스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공익 목적이어도... 우리 기관 뉴스라 하더라도...

공익,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뉴스 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뉴스 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의 소속 언론사가 갖고 있으므로

뉴스 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언론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이런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사례 ①

뉴스저작물의 '무단전재'는 뉴스저작권 침해입니다.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온라인,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기사가 났네! 복사해서 퍼뜨려줘야지. SNS랑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려볼까? 기사 출처만 밝히면 되겠지?

모르는 소리!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올리는 건 출처를 밝혀도 무조건 불법이야!



3. 이런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 13

3. 이런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사례 ②

뉴스를 모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입니다.

외부인들이 볼 수 없는 사내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게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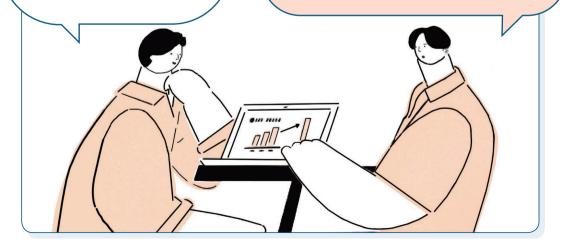
회사 사내게시판에 기사를 복사해서 올려야해. 귀찮아, 시키니까 해야지... 명백한 저작권 침해야!

저작권 침해 사례 ③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입니다.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공중이 볼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스크랩 편집한 것을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 관한 좋은기사가 실렸군. 이런 기사는 널리 알려야해! 홍보업체에 메일을 보내자. 회사 홈페이지에 뉴스를 게시할 때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돼. 또한 업무상 목적으로 메일을 전송한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에게 이를 허락받는 것이 먼저야.



14 뉴스저작권 이용가이드북 3. 이런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

3. 이런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사례 ④

개인 블로그, 카페에 뉴스를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입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일지라도 공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올리거나 이를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인기있는 뉴스 기사를 모조리 내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겠어. 좋은 의도로 기사를 공유한거니 괜찮을거야.

선 방문자 수가 많은 블로그를 운영중이고, 공중이 볼 수 있는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기사를 재배포하는 것에 신중해야해.



저작권 침해 사례 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뉴스저작물을 출판 및 인쇄하는 행위는 뉴스저작권 침해입니다.

공익,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뉴스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인쇄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고액 기부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네! 내 자서전에 이 기사를 넣어볼까? 영리는 물론이거니와 공익·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뉴스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인쇄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야.





16 뉴스저작권 이용가이드북 3. 이런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 17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적극적인 이용 활성화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상 정당한 범위에서는 저작권료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뉴스저작권 상품을 구매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4.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0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 기사는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가 기자에 의한 별도의 창작 노력 없이 그대로 기사화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뉴스 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고 저작물의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언론사의 허락 없이도 뉴스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1쪽 참고)

4.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19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뉴스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링크(Simple Link)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해당 기사로 연결되는 직접링크(Deep Link) 및 프레임링크(Frame Link)와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직접링크(Deep Link)가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이 블로그, 카페 등에서 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으로 연동되는 '단순링크'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1/

추천

♦ 링크의 종류 ♦



단순링크 (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프레임링크 (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직접링크 (Deep Link)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 (플래시 포함)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링크

♦ 참고 ♦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인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 및 판례에서 규정한 제한의 예외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제24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세24소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초/중/고 교육에 해당, 대학 교육은 제외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복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		복제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녹 음 /녹화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복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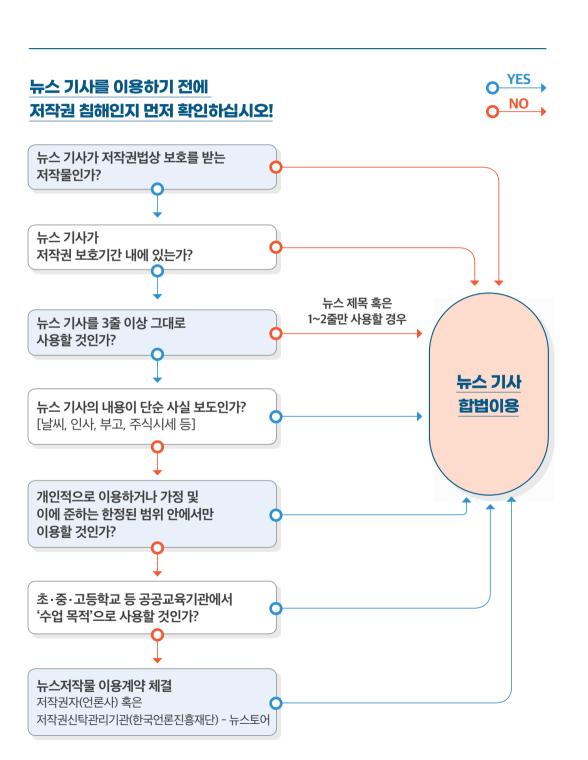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2.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 /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를 표시할 것.

20 뉴스저작권 이용기에드북 4.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2





02. 뉴스저작물 구입을 통한 활용 사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 ◆ 뉴스저작권 합법이용 플랫폼 뉴스토어(www.newstore.or.kr)를 통해 뉴스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뉴스토어는 국내 최대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와 연계하여 기사 검색 및 뉴스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뉴스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뉴스 합법이용 플랫폼입니다.
- ◆ 사용 목적에 따라 기사 단건, 크리에이터, 라이선스, 뉴스데이터, 뉴스분석 API 등의 뉴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2 뉴스저작권 이용기이드북 4.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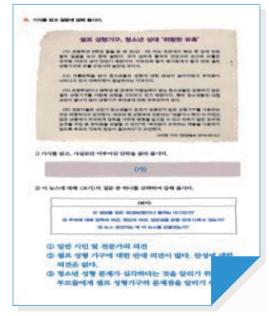
'웹 게시용/ 출판용' 뉴스 기사 상품 구입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뉴스 기사 전문을 게재하여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고객 서비스와 내부 직원의 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뉴스 이용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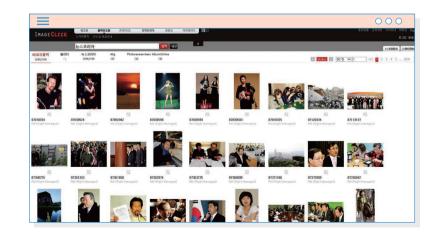
이용목적에 따라 뉴스저작물을 단행본, 전문지, 브로슈어, 전단지 등에 '실물로 출판 및 인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뉴스를 지면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이용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뉴스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는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지면 및 방송뉴스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 출판물 제작 등을 위한 '보도사진' 구입 이용 주요 취재 현장의 생동감 있는 언론사 '보도사진'이 각종 홍보물과 출판물 제작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교과서에도 현장감 있는 교육자료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24
 뉴스저작권 이용기이드북
 4.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03. 뉴스저작물 이용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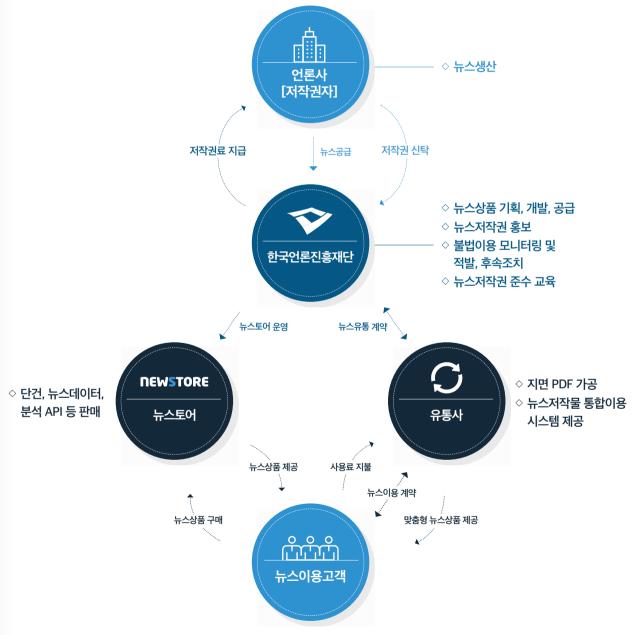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 © 02-2001-7791~8
- news@kpf.or.kr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허가받아 '뉴스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뉴스저작권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122개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언론사를 대신해 연간 1,700여 개 뉴스 사용 기관 및 개인에게 뉴스 콘텐츠를 유통,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기업체 / 출판사 / 기타 단체 / 개인

 26
 뉴스저작권 이용기이드북
 4.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FAQ만 알아도 뉴스저작권 침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5.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저작권법에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저작물은 대부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뿐만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기사를 편집한 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까?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아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경우 기사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물의 무단가공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37조에서는 출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요건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따라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5.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29

5.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우리 기관 관련 뉴스나 기관장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우리 기관 관련 뉴스라 하더라도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나 인터뷰 기사의 기본 자료 제공자는 해당 기업(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자가 자료를 가공하여 기사화하면 창의성이 가미된 저작물로 봐야합니다.

다만 제출된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기사에서 기관장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기관장의 발언 부분만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기고자(기관 및 기업 임직원, 교수 등)가 신문에 기사를 직접 기고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는 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외부 기고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기사를 공익, 홍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법에서는 공익, 홍보,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제38조)은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자의 동의를 구하면 합법 아닌가요?



뉴스 기사는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언론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0 뉴스저작권 이용기에드북 5.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31

5.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라 함은 이용자의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별되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또 인용저작물이 '주'로 되어있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용자가 인용 저작물을 부연, 예증, 논증하는 방편으로 피인용 저작물을 일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뉴스 기사를 통째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정당한 범위 안'의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5)' 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따르면,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뉴스 기사를 요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그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즉,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다소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의 단순한 단축 등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만 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원 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Deep Link)해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하급심 법원은 뉴스 기사의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게재 부분이 이를 작성한 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바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제권 및 전시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용자들에게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 측면(공공성)이 인정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영리성), 오히려 저작권자가 많은 방문자를 얻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2 뉴스저작권 이용가이드북 5.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33

5.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FAQ



방송뉴스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편집하여 영상 또는 캡처 화면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캡처 화면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복제 및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4 뉴스저작권 이용가이드북